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 7. 4.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6월 12일
- 다. 상정일자 : 제97회 제1차정례회 제6차위원회 (2003. 7. 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장 종 환

가. 제안이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일부 사무에 대한 위임근거를 삭제하여 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정책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일부 사무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자치구 사무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보건소장에게 위임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기타 위임사무 관련 근거법령의 개정 등으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동장에게 위임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일부 사무의 위임근거를 삭제함. (제5조 관련, 안별표)

- 1) 경로연금 지급 (지급신청 접수는 동장에게 존치)
- 2) 시체 개장신고 접수 및 처리 (시체 매장 및 화장신고 접수 및 처리는 동장에게 존치)

○ 위임사무에 대한 관련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사무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위임사무의 명칭을 정비함. (제5조 관련 안 별표)

- 1)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 ⇒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 2) 의료보장증 회수 ⇒ 의료급여증 회수

○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처리하던 다음 사무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자치구 사무로 규정됨에 따라 새롭게 위임근거를 마련함. (제5조 관련 안 별표)

1)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 예방접종의 공고
-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
- 환자의 취업제한 및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결핵병원에 입원명령

- 환자에 대한 의료의 실시
- 과태료 부과·징수

2)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사무

-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
-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처리
- 지도·점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관련 별표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중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인 경로연금지급사무와 시체 개장신고 접수 및 처리사무의 위임근거를 삭제하여 구에서 직접처리하고, 근거법령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장증을 의료급여증으로 위임사무의 명칭을 변경·정비하였음.

○ 주관국 생활복지국(산업위생과)란에 규정된 농지의 취득·관리에 관한 사무는 기구개편에 의하여 생활복지국(지역경제과)로 정비하고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

여 처리하던 결핵예방에 관한 일부 사무와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사무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자치구 사무로 규정됨에 따라 주관국 보건소란 중 제3호 결핵예방에 관한 일부사무를 추가 규정하고 제14호를 신설하여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위임 근거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용봉 위원) : 매장 및 화장신고 접수 및 처리는 동사무소 존치 보다는 보건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지 않나?
- 답변요지(장종환 기획예산과장) : 중앙부서부터 계통적으로 업무분장을 시행함.
- 질의요지(김광섭 위원) : 경로연금지급업무의 구 이관은 금융사고와 관련있는 조치인가?
- 답변요지(장종환 기획예산과장) :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조치된 사항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3. 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 이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일부 사무에 대한 위임근거를 삭제하여 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정책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일부 사무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자치구 사무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보건소장에게 위임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기타 위임사무 관련 근거법령의 개정 등으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동장에게 위임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일부 사무의 위임근거를 삭제함.(제5조 관련, 안 별표)

- (1) 경로연금 지급(지급신청 접수는 동장에게 존치)
- (2) 시체 개장신고 접수 및 처리(시체 매장 및 화장신고 접수 및 처리는 동장에게 존치)

나. 위임사무에 대한 관련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사무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위임사무의 명칭을 정비함.(제5조 관련, 안 별표)

- (1)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 ⇒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 (2) 의료보장증 회수 ⇒ 의료급여증 회수

다.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처리하던 다음 사무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자치구 사무로 규정됨에 따라 새롭게 위임 근거를 마련함.(제5조 관련, 안 별표)

(1)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 예방접종의 공고
-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
- 환자의 취업제한 및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결핵병원에 입원명령
- 환자에 대한 의료의 실시
- 과태료 부과·징수

(2)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사무

-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
-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처리
- 지도·점검

3. 개정 근거

- (1) 의료급여법(2002.12.5 법률 제6758호) 제8조
- (2) 의료급여법시행규칙(2003.1.24 보건복지부령 제236호) 제12조, 제15조
- (3) 노인복지법(2000. 1.12 법률 제6124호) 제11조 및 제13조
- (4) 노인복지법시행규칙(2002.12.20 보건복지부령 제231호) 제2조, 제3조 및 제 4조
- (5) 장사등에관한법률(2002.11.19 법률 제6615호) 제8조 제1항 및 제2항
- (6)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 5. 6 보건복지부령 제215호) 제2조
- (7) 결핵예방법 (2002. 12.18 법률 제6798호) 제15조, 제18조,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43조
- (8) 결핵예방법시행령(1999.6.8 대통령령 제16384호) 제22조
- (9) 결핵예방법시행규칙(1999.6.30 보건사회부령 제122호) 제10조, 제18조

(10) 의료법 (2002.12.5 법률 제6759호) 제17조

(11)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2003. 4.10 보건복지부령 제245호) 제7조
제18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생략 :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
에 의거 입법예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입법예고
를 생략함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2003.5.)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관련, 별표 “위임사무” 주관국란중 “생활복지국(산업위생과)”를 “생활복지국(지역경제과)”로 하고, 주관국 생활복지국란중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한다.

주관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1.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2. 의료급여증 회수 4. 경로연금 지급신청 관련 사항 가. 경로연금 지급의 신청 접수 (단 경로연금 지급은 제외) 나. 수급권자의 현황관리 다. 미지급 경로연금 지급 청구 접수 라. 수급권 상실신고 접수 5. 시체 매장·화장신고 접수 및 처리	○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동법시행규칙 제15조 ○ 노인복지법 제11조 ○ 동법시행규칙 제2조 ○ 동법시행규칙 제3조 ○ 동법 제13조 ○ 동법시행규칙 제4조 ○ 동법 제21조 ○ 동법시행규칙 제6조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제2항	동 장

제5조 관련, 별표 “위임사무” 주관국 보건소란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제 8호 가목 근거법령중 “동법시행규칙 제22조”를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로 나 목 근거법령중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를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으로 하 며, 동란제13호 다목 근거법령중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제4항”으로 라 목 근거법령중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제4항”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제5항”으로 하고, 주관국 보건소란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보 건 소	3. 결핵 예방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예방접종의 공고 나.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 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과 보고 라. 환자의 취업제한 마. 입원명령 바.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의 실시 사. 과태료 부과·징수 14.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 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처리 다. 지도·점검	○ 결핵예방법 제15조 ○ 동법 제18조 ○ 동법 제19조 ○ 동법 제23조 ○ 동법 제25조 ○ 동법 제29조 ○ 동법 제43조 ○ 의료법 제17조 제1항·제2항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제1항·제3항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제5항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18조	보건소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위 임 사 무				[별표]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행정 관리국 (총무과)	(생 략)	(략)		행정 관리국 (총무과)	(생 략)	(략)	
생 활 복지국 (사 회 복지과)	1.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	○ 의료보호법 제7조 ○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동장	생 활 복지국 (사 회 복지과)	1.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12	동장
	2. 의료보장증 회수	○ 동법시행규칙 제9조			2. 의료급여증 회수	○ 동법시행규칙 제15조 (현행과 같음)	
생 활 복지국 (사 회 복지과)	3.(생 략)	(생 략)	동장	생 활 복지국 (사 회 복지과)	3.(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동장
	4. 경로연금 지급 신청 관련 사항				4. 경로연금 지급신청 관련 사항		
	가. 경로연금지급의 신청 및 지급	○ 노인복지법 제11조 ○ 동법시행규칙 제2조			가. 경로연금 지급의 신청 접수 (단, 경로연금 지급 은 제외)	○ 노인복지법 제11조 ○ 동법시행규칙 제2조	
	나. 수급권자의 현황 관리	○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수급권자의 현황 관리	○ 동법시행규칙 제3조	
	다. 미지급 경로연금 지급청구, 접수 및 지급	○ 동법 제13조 ○ 동법시행령 제17조 ○ 동법시행규칙 제4조			다. 미지급 경로연금 지급 청구 접수	○ 동법 제13조 ○ 동법시행규칙 제4조	
라. 수급권 상실신고 접수	○ 동법 제21조 ○ 동법시행규칙 제6조	라. 수급권 상실신고 접수	○ 동법 제21조 ○ 동법시행규칙 제6조				
5. 시체매장·화장 또는 개장신고 접수 처리	○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5조의2 ○ 동법시행령 제1조	5. 시체 매장·화장 신고 접수 및 처리	○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2항				
생 활 복지국 (산 업 위생과)	6.(생 략)	(생 략)	(생략)	생 활 복지국 (지역 경제과)	6.(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1.~2.(생략) 3. <u>결핵예방에 관한</u> 다음 사무 가. 예방검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나. 예방검종 실시 현황보고 접수	(생략) ○ 결핵예방법 제19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동법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보건소장		1.~2.(현행과 같음) 3. <u>결핵 예방에 관한</u> 다음 사무 가. 예방검종의 공고 나. 예방검종증명서의 교부 다. 예방검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과 보고 라. 환자의 취업제한 마. 입원명령 바.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의 실시 사. 파테르 부과·접수	(현행과 같음) ○ 결핵예방법 제15조 ○ 동법 제18조 ○ 동법 제19조 ○ 동법 제23조 ○ 동법 제25조 ○ 동법 제29조 ○ 동법 제43조	보건소장	
	4.~7.(생략) 8. 안마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시술소 개설신고 수리 나. 시술소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수리 다.~바.(생략)	(생략) ○ 의료법 제30조 제3항 및 제61조 ○ 동법시행규칙 제22조 ○ 동법 제30조 제6항 및 제61조 ○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생략)		4.~7.(현행과 같음) 8. ----- 가. ----- 나. ----- 다.~바.(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 ○ 동법 제30조 제6항 및 제61조 ○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	(현행과 같음)	
보건소	9.~12.(생략) 13. 진단용 방사선발생 장치 설치에 관한 다음 사무 가.~나.(생략) 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사항 신고처리 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대상 작성·비치 및 관리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동법 제32조의2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안전 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 ○ 동법 제32조의2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안전 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제4항		보건소	9.~12.(현행과 같음) 13. ----- 가.~나.(현행과 같음) 다. ----- 라.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안전 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제4항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안전 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제5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마.~사.(생략) (신설)	(생략) (신설)	(생략) (신설)		마.~사.(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보건소				보건소	14. <u>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 사무</u> 가. <u>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u>	○ <u>의료법 제17조 제1항·제2항</u> ○ <u>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제1항·제3항</u>	(현행과 같음) 보건소장
					나. <u>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처리</u>	○ <u>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제5항</u>	
					다. <u>지도·점검</u>	○ <u>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8조</u>	